

# 가정상담

2016

7

통권 395호

ISSN1227-7568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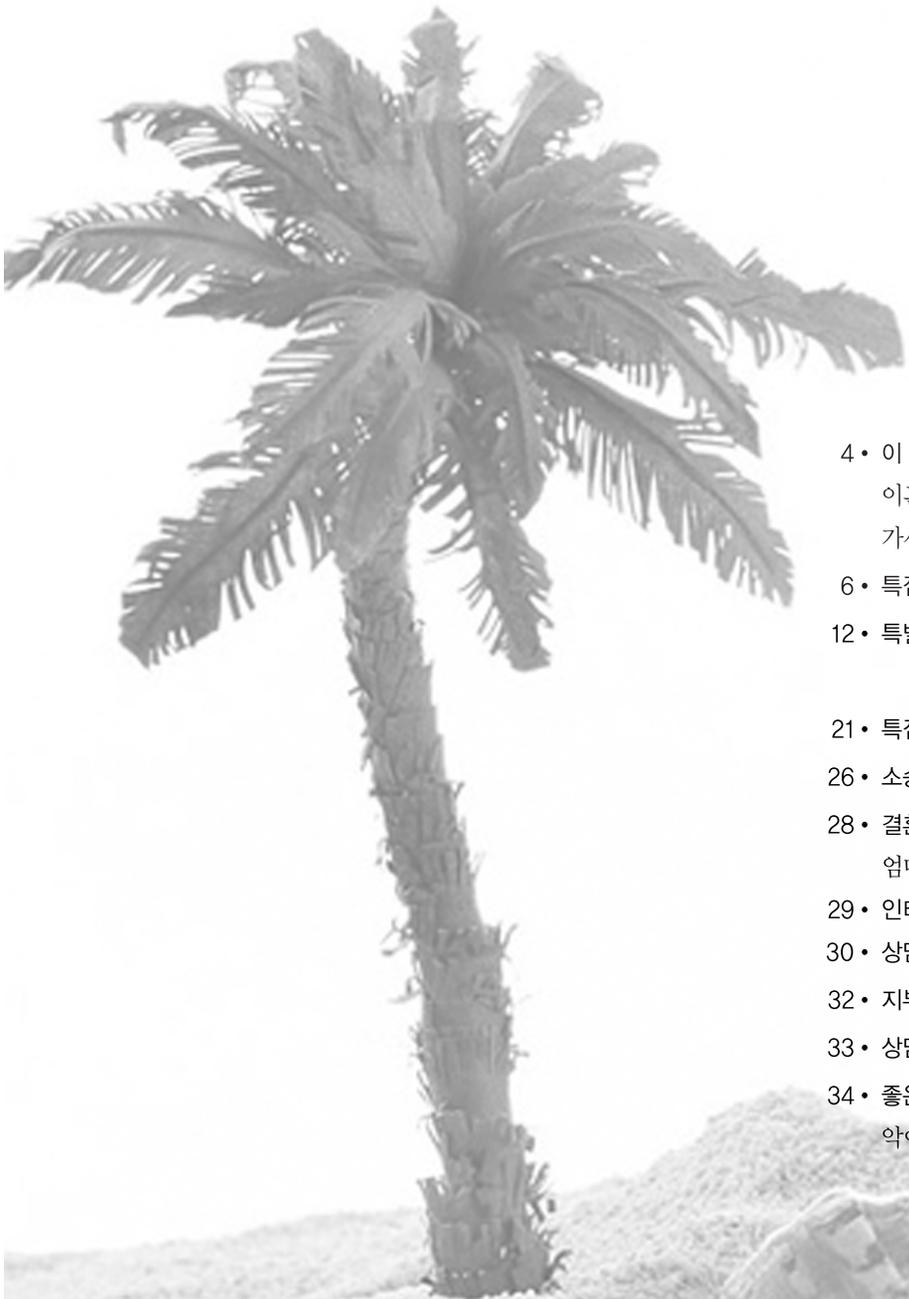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본소상담소는 창립 60주년 기념 두 번째 심포지엄으로 지난 6월 22일 본소 강당에서 '가족의 현실과 미래 - 다시 가족을 이야기 한다'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관련내용 6면, 관련기사 30면)



상담소는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가정폭력경험자로 본소에서 상담을 받은 피해자와 행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사진은 지난 5월 24일 행위자 간담회 모습이다.  
(관련내용 12면)



- 4• 이 달의 메시지  
이혼에 대한 예의  
가사소송 당사자는 신중하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 6• 특집 I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0주년 기념 심포지엄 II ❶
- 12• 특별기획 | 창립60주년기념 가정폭력관련 간담회 ❷  
- 가정폭력가해경험남성
- 21• 특집 II |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제5강
- 26• 소송구조
- 28• 결혼과 인생(161) 만화일기  
엄마의 옷장 \_ 장차현실
- 29• 인터넷 상담
- 30• 상담소 소식
- 32• 지부소식
- 33• 상담통계
- 34• 좋은 책  
악어 프로젝트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 이 달의 메시지



### 이혼에 대한 예의

가사소송 당사자는 신중하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40여년을 넘게 상담소에서 하루에 십 여건 때로 그 보다 많은 이들의 가정 문제를 상담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이 부부갈등 또는 이혼에 관한 것이었으니 아마 저는 우리 사회에서 이혼문제를 가장 많이 접해본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혼’은 통계적으로 급속히 증가하였고 따라서 이혼에 관한 우리 사회의 관점과 시각 또한 많이 달라졌음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이혼이 자신의 문제가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혼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더욱이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부부는 이혼하면 타인이 되지만 자녀에게는 각각 부와 모로 평생 남게 되는 것이고 또 마땅히 그러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열 건의 이혼상담이 있다면 열 가지의 사례가 있습니다. 비슷한 범주로 나누어 재판상 이혼의 법적인 이혼사유 6가지를 구분하지만 그 6가지 안에서 수십, 수백 개의 사례가 변주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되고 친인척이 되었다가 다시 타인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결코 간단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 지수를 보면 배우자의 사망이 100으로 1순위이고 그 다음이 73인 이혼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더 나은 삶을 선택하기 위한 것이 이혼이지만

그 과정이 그만큼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뜻일 것입니다. 사회적인 연구를 위해 이혼을 통계로 이야기하지만 이혼 한 건에 담겨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들여다 보면 이 지극히 사적인 영역의 것을 숫자와 이혼사유로 범주화 하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느끼게 됩니다.

얼마 전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이의 이혼과 관련, 2심에 계류되어 있는 이혼소송에 관해 한 쪽 당사자가 사석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발언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 되어 큰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 사안은 이혼에 대한 예의, 지켜야할 법 그리고 언론의 올바른 자세 등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기자가 '비보도 약속'을 어긴 것은 언론계에서 따로 논의할 문제라고 보고, 가사소송 당사자들은 본인의 언행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피해를 당할 수 있는지 신중히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사안의 당사자는 기자들과의 모임이 '비보도'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약속이 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과연 의식하지 못했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당사자가 지금까지 본인이 주장해온 것처럼 진심으로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면 언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의 원인과 배경을 자의적으로 알려서는 안 되었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신뢰하는 관계라 해도 대화 내용이 부주의로 세간에 알려질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도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당사자는 결혼 과정과 가정생활에서 자신이 겪었다는 '고통'을 일방적으로 이야기 하면서 초등학교생인 자녀가 처해있는 상황까지 공개했습니다. 소송의 상대방이 이런 기사를 보았을 때, 소송을 취하하고 재결합하겠다는 결심을 할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이 당사자는 자신의 부적절한 발언이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재결합의 가능성을 거의 잃어버리는 한 편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아내에게 극심한 환멸과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 봅니다.

물론 저는 이 당사자가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재벌가의 사위가 되어 정신적으로 겪었을 고통과 피곤함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을 지켜보면서 아내 또한 얼마나 고통과 아픔을 겪었을지 미루어 짐작이 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이 당사자의 배려 없음이 아쉽기 그지없었습니다. 당사자가 겪었다는 고통은 엄밀하게 자신이 해결했어야 할 일이고 그 내용은 오직 법정에서만 공개되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혼에 대한 관점과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고는 해도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이혼을 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현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그 대상이 재벌가의 사람이든 평범한 일반시민이든 미치는 영향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당사자가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간에 결과적으로 본인들의 이혼과 관련한 내용을 언론에 보도되게 한 것은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연령·직업만을 볼 때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금지)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혼소송에 대한 판결이 최종심에서 확정되기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가사소송법 제10조는 계속 적용될 것입니다.

이혼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게 되었음에도 아직 우리 사회는 그와 관련하여 성숙한 자세와 문화가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여생을 보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혼인은 지속하지 않더라도 인간적으로 좋은 관계로는 남을 수 있습니다. 또 이것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자녀를 둔 관계라면 부부로 사는 것은 여의치 않아 그 관계는 정리하지만 부모로서 자녀를 책임지는 일은 끝까지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격의 바닥까지 드러내고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내는 일까지는 삼가려는 노력정도는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이란 무엇일까에 대해 새삼스럽게 돌아보게 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0주년 기념 심포지엄 II\*

## 가족의 현실과 미래 - 다시 “가족”을 이야기 한다 (1)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60년 상담통계에 나타난 한국가정의 변천사

- 가족의 과거, 현재, 미래
- 가족의식의 변화와 남성의 변화
- 한국가족, 다양해지고 있는가?
-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현황과 비전
- 복지국가의 가족정책
- 변화하는 사회와 가족법의 역할 및 과제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60년 상담통계에 나타난 한국가정의 변천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56년 8월 25일 창설된 본 상담소는 ‘법률구조’라는 개념조차 없던 우리나라에 그 씨앗을 뿌려 법을 몰라 고통 받고 빈민하는 이웃들을 돕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왔다. 지난 60여년간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많

은 변화가 있어왔고, 이러한 변화는 상담소를 방문한 내담자들의 특성과 상담사유 등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나타났다. 이에 상담통계를 토대로 여성과 남성의 문제, 세대 간 문제가 어떤 양식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956년 첫 해의 상담건수는 336건이었으나 2015년에는 74,468건으로 222배나 증가하였다. 또한 지난 60여년간 본 지부를 합해서는 총 3,585,801건의 법률구조사업을 진행해왔다.

### 연대별 특징

연대별 특징을 살펴보면, 1950~60년대에는 다른 연대에 비해 사실혼 해소상담의 비율이 높았는데 혼인신고라는 법적 형식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남녀 모두 외도와 가족 간 갈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첩관계를 용인하고, 대가족 생활이 일반적이었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본소 본소에서는 지난 6월 22일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두 번째 심포지엄 ‘가족의 현실과 미래 - 다시 “가족”을 이야기 한다’를 실시하였고, 이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을 순서대로 요약하여 게재한다.

1970년대에는 부부갈등 상담이 급증하였다. 또한, 다른 연대에 비해 배우자의 생사불명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6.25 및 베트남 전쟁, 서독 광부 파견 등으로 인해 십수년이 흘러도 배우자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자 돌아올 것을 포기하고 이혼을 결심한 이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1980년대에는 70년대에 비해, 이혼상담건수가 약 2.8배 증가하였다. 이혼사유를 보면, 다른 연대에 비해서 남성은 아내의 가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경우 아내에 대한 폭력이 선행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아내의 가출 증가는 남편의 폭력 증가와 연관이 있다 할 것이다.

1990년대에는 이혼상담이 급증하여 면접의 과반수를 넘었다. 또한, 다른 연대에 비해 남편의 폭력을 주장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폭력 자체가 증가했다기보다는 여성들이 90년대 들어서는 폭력이 부당하다는 것을 인식한 후 이혼을 통해서라도 대응하려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0년대에는 이혼상담이 더욱 증가하였고, 채권채무에 관한 상담도 90년대에 비해 3.5배 증가하였다. 이는 90년대 후반에 시작된 외환위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제 문제는 가정 내 문제로 전이되어 결과적으로 2000년대에 이혼상담의 증가를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

2010년대에는 기타사유가 증가하였다. 과거에는 외도, 가출, 폭행처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유를 내세웠으나 이제는 성격차이, 애정상실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들도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이혼을 결심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 면접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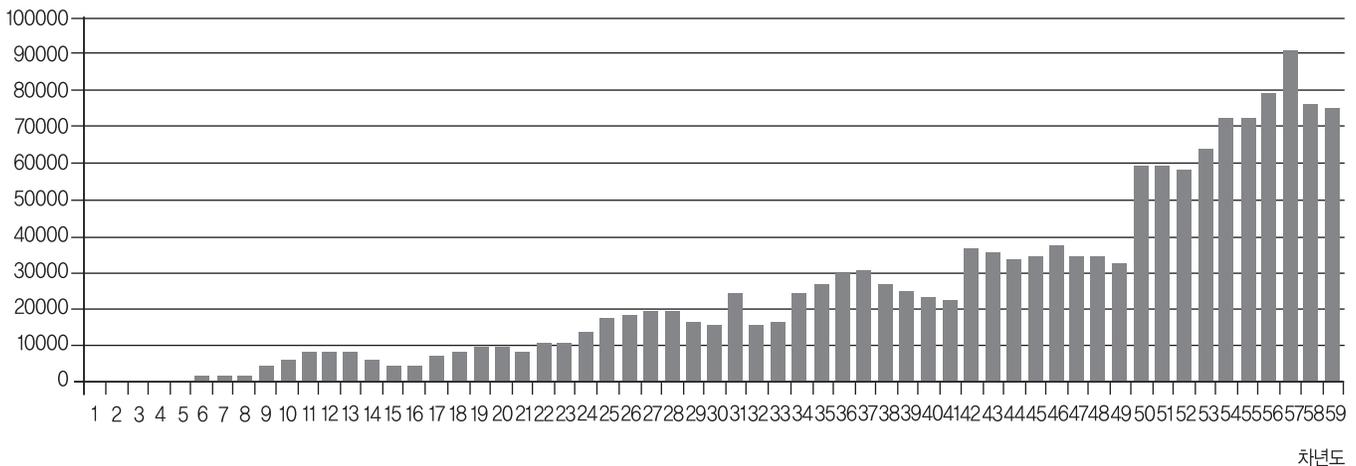
면접상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60여년간 본 상담소를 직접 방문한 내담자 467,964명의 상담내용을 보면, 가사사건의 비율이 가장 많았고, 세부적으로는 이혼, 부부갈등, 남녀관계, 사실혼해소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만 협의이혼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상담 건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2009년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도입으로 양육비 확보가 수월해짐에 따라 양육비 청구 방법에 관한 상담도 많아졌다.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2008년부터는 상담통계 분석에 있어 호적관계 항목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고, 친양자와 성변경 항목이 추가되었다.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부모에 대한 부양 문제로 가족간 갈등을 겪는 경우도 증가하였는데 자녀는 형제들과 부

총상담건수



사건내용별 면접상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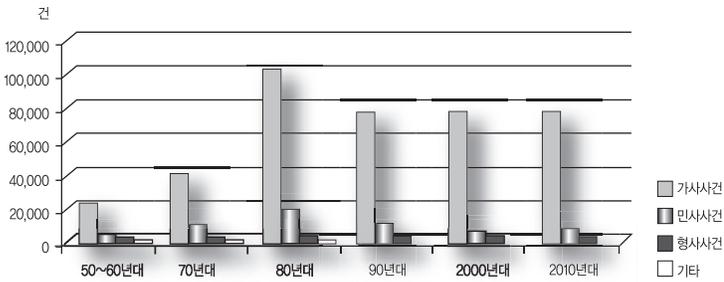
구분	연도	50-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합계		
		사건수	총수 (건)	백분율 (%)												
가사	파혼	664	2.2	824	1.5	1,666	1.3	618	0.7	150	0.2	45	0.1	3,967	0.8	
	사실혼해소	3,363	11.1	3,591	6.7	5,645	4.6	3,463	3.9	2,093	2.5	1,267	1.5	19,422	4.2	
	이혼	11,880	39.3	17,754	33.3	49,439	39.9	45,390	50.9	43,712	51.7	35,620	41.0	203,795	43.5	
	남녀관계	2,768	9.2	5,068	9.5	8,358	6.8	3,146	3.5	1,298	1.5	410	0.5	21,048	4.5	
	부부갈등	1,641	5.4	11,632	21.8	29,054	23.5	18,730	21.0	17,789	21.1	12,065	13.9	90,911	19.4	
	친자 관계	인지	970	3.2	793	1.5	2,590	2.1	1,312	1.5	234	0.3	541	0.6	10,023	2.1
		친생부인									67	0.1	348	0.4		
		친자부존재									782	0.9	2,386	2.7		
	양자관계(~55)	34	0.1	134	0.3	416	0.3	416	0.5	220	0.3	682	0.8	1,902	0.4	
	파양											197	0.2	197	0.0	
	친양자									74	0.1	340	0.4	414	0.1	
	부양관계	1,186	3.9	840	1.6	1,836	1.5	1,251	1.4	583	0.7	692	0.8	6,388	1.4	
	유언·상속	595	2.0	559	1.0	2,595	2.1	2,267	2.5	2,012	2.4	5,223	6.0	13,251	2.8	
	위자료·재산분할									1,712	2.0	2,528	2.9	4,240	0.9	
	친권·양육권									1,550	1.8	2,134	2.5	3,684	0.8	
	양육비									1,771	2.1	3,709	4.3	5,480	1.2	
	면접교섭권									374	0.4	537	0.6	911	0.2	
	혼인무효·취소									407	0.5	616	0.7	1,023	0.2	
	이혼무효·취소									82	0.1	46	0.1	128	0.0	
	호적관계(~51)															
가족관계등록부(52~)									670	0.8	1,631	1.9	2,301	0.5		
성변경									76	0.1	659	0.8	735	0.2		
개명									6	0.0	416	0.5	422	0.1		
미성년후견											341	0.4	341	0.1		
성년후견											861	1.0	861	0.2		
가사절차									53	0.1	1,654	1.9	1,707	0.4		
기타								231	0.3	2,203	2.6	3,075	3.5	5,509	1.2	
계		23,101	76.4	41,195	77.2	101,599	82.1	76,824	86.1	77,918	92.3	78,023	89.9	398,660	85.2	
민사	주택관계	임대차						394	0.4	591	0.7	252	0.3	1,804	0.4	
		부동산								377	0.4	190	0.2			
	채권채무	417	1.4	419	0.8	1,991	1.6	756	0.8	2,377	2.8	680	0.8	6,640	1.4	
	파산									872	1.0	5,998	6.9	6,870	1.5	
	개인회생											282	0.3	282	0.1	
	민사절차	1,867	6.2	3,649	6.8	5,577	4.5	3,337	3.7	236	0.3	78	0.1	14,744	3.2	
	민사기타	1,815	6.0	6,279	11.8	11,260	9.1	6,299	7.1	871	1.0	656	0.8	27,180	5.8	
계		4,099	13.6	10,347	19.4	18,828	15.2	10,786	12.1	5,324	6.2	8,136	9.4	57,520	12.4	
형사	간통	1,430	4.7	548	1.0	1,504	1.2	649	0.7	226	0.3	74	0.1	4,431	0.9	
	혼인빙자간음	557	1.8	558	1.0	962	0.8	230	0.3	155	0.2	4	0.0	2,466	0.5	
	성폭행	104	0.4	66	0.1	111	0.1	97	0.1	148	0.2	76	0.1	602	0.1	
	성매매									-	-	2	0.0	2	0.0	
	폭행·상해·사기	229	0.8	139	0.3	254	0.2	242	0.3					864	0.2	
	형사절차	67	0.2	18	0.0	15	0.0	58	0.1	16	0.0	92	0.1	266	0.1	
	형사기타	329	1.1	266	0.5	335	0.3	350	0.4	702	0.8	412	0.5	2,394	0.5	
계		2,716	9.0	1,595	3.0	3,181	2.6	1,626	1.8	1,247	1.5	660	0.7	11,025	2.2	
기타		305	1.0	261	0.5	193	0.1	-	-					759	0.2	
합계		30,221	100	53,398	100	123,801	100	89,236	100	84,489	100	86,819	100	467,964	100	

양의무를 나눠 질 수 있는지, 노부모는 정부로부터 생활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할 때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해 왔다.

2013년부터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치매나 질병 등으로 인해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운 가족의 후견인 선임에 대해 문의해 왔다. 피후견인이 될 사람들은 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상속 등을 통해 장래에 재산을 받을 예정인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다른 사람이 후견인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온 경우도 있었다.

유언·상속에 관한 상담 건수도 증가하였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알고자 하였고, 상속 재산에 대한 다툼과 유류분에 대한 문의도 많았다. 또한 사후에 남겨질 배우자를 위해 배우자에게만 재산을 남길 수 있는 유언방식이나 기관에 전액을 기부하는 방법 등을 알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다. 망자가 빚을 남긴 경우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에 대한 상담도 많았다.

면접 - 연대별 · 사건내용별



남녀별 면접상담 분석

연 대	총수(건)	남성(명)	백분율(%)	여성(명)	백분율(%)
50-60년대	30,221	7,248	24.0	22,973	76.0
70년대	53,398	13,493	25.3	39,905	74.7
80년대	123,801	30,289	24.5	93,512	75.5
90년대	89,236	17,301	19.4	71,935	80.6
2000년대	84,489	20,117	23.8	64,372	76.2
2010년대	86,819	29,916	34.5	56,903	65.5
합 계	467,964	118,364	25.3	349,600	74.7

민사사건 중 파산에 관한 상담도 해마다 증가하였는데 이는 90년대 말 시작된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적 곤란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면접상담을 한 사람은 여성이 남성보다 약 3배 많았는데 남녀 비율 차이가 점점 줄어들었다. 이는 과거에 비해 남성의 사회와 가정 내 위상이 약해진 점, 자존심이나 자격지심으로 남에게 문제를 내놓기 꺼려했던 과거의 아버지, 남편들과는 달리 자기의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남성들의 의식이 변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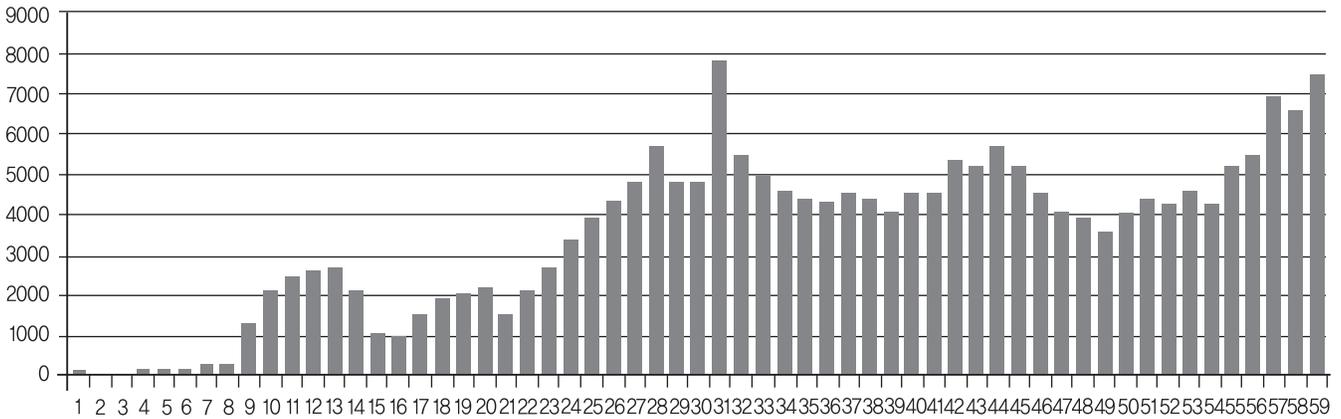
### 이혼상담

총 이혼상담건수는 203,795건이었다. 이혼상담은 80년대까지는 면접의 약 30~40%를 차지하였으나 90년부터는 과반수를 넘었다. 이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 허용적으로 바뀐 점과 남편에게 종속적일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의 교육수준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가정 내 지위 변화 등으로 자연스럽게 야기된 결과라 보인다. 또한 90년 가족법 개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도입하고, 자녀양육을 부모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여성이 대등한 권리를 갖도록 한 점 역시 이혼 상담의 증가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여성이 남성보다 약 4.4배 많았는데 이는 여전히 가정 내에서 여성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음을 드러내는 결과라 할 것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30,40대가 가장 많았다. 그런데 50대와 60대 이상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결혼초부터 갈등이 있어도 이혼을 보류하였다가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면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50대의 이혼상담 증가는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60대의 경우도 자녀문제로 이혼을 보류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과 기대수명의 증가로 더 이상은 참고 살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이혼상담건수



남녀 모두 고졸, 대졸, 중졸 순이었으며 남성은 회사원, 무직, 자영업, 여성은 주부, 무직, 단순노무 순이었다. 혼인형태는 초혼이 가장 많았으나 재혼가정의 재이혼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혼인 초기에 파탄에 이르는 비율이 1/4정도였고, 21년 이상, 31년 이상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50대, 60대 이상 증가 경향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60년간 남녀 모두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한 이혼상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남성은 아내의 가출, 외도, 여성은 남편의 폭력, 외도가 많았다.

남성의 경우 아내 가출은 기타사유 다음으로 항상 많았다. 남성은 아내가 외도나 경제갈등 등 다양한 이유로 집을 나간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아내의 가출 전에 남편의 폭력이 선행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실제로 여성의 이혼 상담 사유를 살펴보면 기타 사유인 6호사유를 제외하고 단일 사유로는 남편의 폭력이 항상 가장 많은데, 대부분 모든 이혼사유와 병합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아내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남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논의도 있는데 남성과 여성이 부당한 대우를 이해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즉, 여성은 배우자의 극심한 폭행이나 학대가 반복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데 반해, 남성은 자

신에 대한 무관심, 경미한 폭행이나 모욕적인 언사, 자신을 가장으로서 잘 대우하지 않는 태도 등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다.

여성의 경우 남편의 가출을 호소하는 이들이 2010년대 들어서 크게 증가하였다. 과거에는 남편이 외도하면서 가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경제 상황이 열악해지기 시작한 90년대 후반부터는 실직이나 사업에 실패한 후 집을 나간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고자 해도 남편이 있으면 어려워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혼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였다.

다음으로 이혼사유 중 비율이 가장 높은 기타 사유는 그 내용이 점차 세분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다. 가장 많이 제시한 사유는 성격차이였고, 다음은 경제갈등, 생활무능력, 장기별거 등이었다.

성격차이는 부부 불화의 총괄적인 개념으로 다른 항목과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남녀의 인식이 달라 남성은 아내가 남편이나 시집에 순종하지 않고, 현신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때 성격차이가 있다고 인식하는 반면, 여성은 남편이 자기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이어서 아내나 처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 성격차이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남성의 경우 경제문제와 관련된 이혼상담의 증가가 두드

러졌다. 이는 생활비, 무리한 투자, 빚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아내는 맞벌이로 경제권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한 반면, 남편은 실직 등으로 점점 더 설 자리가 없다고 호소해왔다. 또한, 늘어나는 빚을 갚지 못해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감당할 수 없어 가정해체에 이르게 되었다는 상담들도 적지 않았다.

배우자의 이혼강요도 비중있는 사유로 꼽혔다. 아내는 오랜 시간 참다가 이혼을 요구했어도 남편은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조차 납득하지 못해 이미 정서적 이혼상태에 놓여 있었고, 이혼요구가 반복될 경우 결국에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혼상담을 해왔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아내의 정신병을 이유로 상담을 해온 이들도 증가하였다. 아내가 우울증, 의부증, 성격파탄 등의 정신병을 앓고 있지만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치료를 거부해 힘들다고 호소해왔다. 주벽 역시 증가 양상을 보였는데 아내들은 대부분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아 남편과 자녀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알콜중독에 빠진 경우가 많았다.

아내의 불성실한 생활을 문제 삼은 이들도 증가하였다. 가사일과 자녀 양육 등을 등한시하면서 외부 활동과 여가 생활에만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심할 경우 외박과 가출까지도 일삼아 혼인 생활에 직접적인 갈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도 경제문제가 증가했는데 맞벌이로 수입은 더 증가했어도 소비가 늘어나 지출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젊은 층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능력을 문제삼거나 대놓고 처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 결혼생활이 어렵다며 상담을 해왔다.

장기별거도 증가했는데 갈등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별거를 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혐의하지 않고 일방의 가출로 별거가 야기된 경우가 많았다. 별거초기에는 자녀문제 등

을 이유로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수년씩 장기화되면 연락이 끊겨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자녀양육갈등도 늘어났다. 자녀수는 줄었으나 맞벌이 증가로 인해 양육자지정, 양육비용, 양육 방식 등 다양한 요소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남편이 실질적인 양육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양육비용이나 방식 등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한다고 호소해왔다.

시가와의 갈등도 꾸준히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시부모의 며느리에 대한 학대가 있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며느리의 시부모에 대한 무시, 냉대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 과거에는 사위에 대한 처가의 태도도 무조건 긍정적이고 호의적이었으나 9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는 딸과의 관계가 원만한지에 따라 그 태도가 상당히 비판적으로 바뀌었다.

의처증 역시 꾸준히 나타났다. 사소한 단서만 가지고도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의심받을 등 이미 서로 간에 신뢰가 깨진 경우가 많았다. 의처증에는 대부분 심각한 수준의 폭언과 폭행도 수반되었고 치료를 요하는 병적인 수준에 이른 경우가 많았다.

3백만 건이 넘는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 상담소는 60년 동안 계속해서 가정 내에서의 양성평등과 가정의 민주화 그리고 모든 가족 구성원의 복리 구현을 목표로 한 법률구조, 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사업,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상 남녀·부부차별을 없애기 위한 가족법 개정에 매진해왔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여성의 법적지위 향상과 권익 신장을 이루었으며 가정 내에서 남녀평등, 부부평등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된 노력과 실천으로 가정의 민주화 나아가 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김진영 상담위원

## 처음에 와서는 벽을 치는 것도 폭력이라고 물었지요

상담소는 창립60주년을 기념하여 가정폭력경험자로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피해자와 행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5월 12일 배우자로부터 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4일에는 배우자에게 폭력을 한 남성들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를 통하여 상담소는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이후 18년간 시행해온 상담소의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점검하였으며, 간담회에서 개선된 의견을 향후 프로그램 운영 및 가정폭력근절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하여 진솔한 의견을 개선해주신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 일 시 : 2016년 5월 24일 화요일 오전 10:30-12:00
-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
- 좌 장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배희 소장
- 참석자 : - 상담소 관계자 :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이숙현 편집부장, 차연실 상담위원  
 - 가정폭력행위자 4명(상담 종료 3명, 상담진행 중 1명)  
 :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행위자

이름	나이	혼인신고	자녀관계	상담 종료시점	상담 경과	현재상황
이○○	52세	1994년	1남 1녀	2014/3/31	아내 : 전화상담 남편 : 개별상담, 음주문제 집단상담, 집단상담	화해, 동거
김○○	58세	1983년	1남 1녀	2015/7/6	아내 : 개별상담, 교육강좌, 라오니모임 남편 : 개별상담, 음주문제 집단상담, 집단상담, 교육강좌 부부 : 부부상담	화해, 동거
김△△	44세	2014년	배우자의 전혼자녀 1남	2016/2/12	아내 : 개별상담 남편 : 개별상담 부부 : 부부 집단상담, 부부캠프	화해, 동거
김□□	60세	1981년	1남 1녀	2016/6/16	아내 : 개별상담 남편 : 개별상담, 교육강좌 부부 : 부부 집단상담, 부부캠프	화해, 동거

**곽배희 소장** : 올해 우리 상담소가 문을 연 지 60년이 됩니다. 국가기관도 아닌 민간기관이 60주년을 맞이하였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소에서는 가정문제를 전문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특히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과 병합되어 나타나는 것이 폭력으로 가정 내에서 부부간의 갈등과 마찰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등 원인으로는 성격 차이뿐만 아니라 법에 정해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당사자가 누구이든 폭력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어서 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간의 행동과 도덕을 최소한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가정폭력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 상담소에서는 폭력을 행한 사람 혹은 폭력을 당한 사람을 대상으로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소 창립 60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해온 일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기에 여러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가정 내에서 폭력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입을 통해서 피해를 준 사람을 일반적인 개념으로 가해자라고 부르지만, 저희는 가해자라는 말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 같은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법률적으로는 구분이 필요하기에 가해자라는 말 대신에 행위자라는 개념으로 상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입장이어도 오늘 간담회 자리가 썩 내키지는 않을 법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할 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력의 원인이 1차적으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본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동을 하게 한 상대방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오늘 간담회를 통해 마음속에 쌓인 이야기도 하고 더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좀 더 건강한 가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네 분께 감사드리며 편안하게 이야기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아내와 만나서 결혼생활을 시작할 때, 가정생활을 꾸려나가면서 정말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내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하게 되었다는 것과 관련 기억나는 일이 있는지요?

**이○○** : 네, 저는 사실 폭력의 범위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상담선생님께 벽을 치는 것도 폭력이나고 물어보면서 폭력의 범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상담소에 왔을 때에는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지 굉장히 화가 많이 났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주먹으로 벽을 치는 것, 문을 쾅 닫는 것 모두가 폭력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내가 힘으로 상대방을 때려야만 폭력으로 알더라구요.

**곽배희 소장** : 혹시 아내가 나를 화나게 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 나세요?

**이○○** : 아내와 대화를 하다보면 내 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답답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생각만 말하게 되고, 대화가 안 되다보니 답답해서 욕설을 하게 되었고,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는 것은 알았기에 화가 나면 벽을 치거나 문을 쾅 닫는 행동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술 때문이죠, 집사람이 술을 먹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대부분 술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곽배희 소장** : 그것은 대화가 안 된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죠. 동기부여는 술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 있네요.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나에게 시비를 걸었다라고 생각할텐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 : 그렇죠. 당시 저는 밖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과 술을 먹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 들어오면 이에 대해 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곽배희 소장** : 그런 과정에서 아내와의 의견이 다르죠, 예를 들어 이○○씨가 보기에는 밖에서 다른 남자들도 다 술을 마시는데, 그리고 나 정도는 보통인데 아내는 나를 중독이라 생각하는 거죠?

**이○○** :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매일 먹는 것이 습관이 되면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당시 집사람은 중독이라고 했지만 나는 잘 몰랐어요.

**곽배희 소장** : 정리해보면 내 말이나 행동에 대해 아내가 인정하거나 납득하지 않고 자기 의견만 주장하고 나를 코너로 몰아세우고, 그러다보니 술도 마셨겠다 핑계에 감정 조절이 안 되다 보니 폭력이 있었다, 이것이 상담소에 오기까지의 과정이 신가요?

**이○○** : 네.

**곽배희 소장** : 그렇군요. 김○○씨는 어떠세요?

**김○○** : 지난 세월을 쭉 돌이켜보면, 제가 어려서부터 문제가

있었고, 부부가 각자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으며, 가치관의 차이, 신뢰나 믿음은 서로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곽배희 소장** : 상대방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많이 나옵니다. 기대치가 높았다는 말씀인가요?

**김○○** : 네,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요.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고 반발심이 생겼고, 당연히 가치관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에 권위가 상실되면서 자괴감을 많이 느꼈죠. 각자 과거의 생활환경이 다른데서 기대치도 달랐으니까요.

**곽배희 소장** : 맨 처음의 문제도 거기서 비롯되었을까요?

**김○○** : 그렇습니다. 저는 탐욕에 빠지게 되어 화를 내고, 화를 내다보니까 폭력도 했지요. 그리고 서로 믿었는데... 아내는 나를 믿고, 나는 아내를 믿다 서로 배신을 한거죠. 쉽게 말해서 돈 문제인데, 받아야 할 곳에서 돈을 못 받게 됐어요. 이것이 저에게 계속 스트레스가 되고, 분의 아니게 술 먹게 되고, 충동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체벌을 하게 되고, 결국 딸이 집을 나갔어요.

**곽배희 소장** : 그걸 본 아내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그러니까 김○○씨 입장에서 본다면 굳이 아내에게 이런 원인이 있었다, 이런 잘못이 있었다라고 말하기 보다는 김○○씨의 사고방식, 인생관, 가정환경, 경제적인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갈등과 마찰의 원인이 되었는데 아내가 나를 참고 견뎌주지 않았고,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낼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가 이해나 납득이 되지 않아 폭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 : 네, 제 잘못이지 아내 잘못은 없죠.

**곽배희 소장** : 그렇더라도 가정이라는 게 기본적인 공동 생활체인데, 동기부여는 김○○씨가 했을 수 있지만, 전적으로 백퍼센트 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따지고 보면 아내 입장에서 좀 참고 넘어가주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이는 차차 듣기로 하구요. 맨 처음에 아내와 심하게 다툰 일이 어났고, 아내에게 부지불식간에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기억나세요?

**김○○** : 네, 집사람은 마흔 중반까지 저에게 순종했습니다. 저는

노동일로 가족들을 이끌어가면서 홀로 생활 전선에서 뛰었습니다. 집사람 몸이 안 좋아지면서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상담소에 오게 된 것은 사소한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관창은 학교를 다니면서도 컴퓨터 중독이 되어서 몇 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어요. 저는 이런 아들 때문에 상당히 배신감을 느꼈죠. 그래도 아들을 위하여 마음에 가족들에게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하자고 강조했어요. 아내에게도 필요없는 지출을 줄이자고 하고요. 저는 돈에 욕심 있는 사람도 아니고, 노후에 편안히 살자는 게 목적이었는데, 가족들은 생활 관념을 모르더라구요. 남편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삶에 대해 걱정도 근심도 없고 가족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걱정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점들로 답답한 외중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니깐 집사람은 듣기 싫고 화가 난 것 같아요. 아내가 제게 듣기 싫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깐 저도 모르게 기분이 안 좋더라구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인데...

**곽배희 소장** : 아이가 몇 살이에요?

**김○○** : 서른 초반인데 아직도 취직을 안 했어요. 여하튼 집사람이 짜증을 내는 과정에서 딸이 일방적으로 엄마 편을 드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벽을 치고 식기를 집어 던졌어요. 우발적으로 딸을 밀쳐는데 딸이 신고를 했더라구요. 경찰서에 가서 앉아 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가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딸이 신고한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요. 딸이 나를 닮았는데 아버지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서에서 좋게 해결하자고 해서 나는 경찰로 넘어가도 상관없다 했지만 시간이 좀 지나다보니까 내가 뭐하고 있는 건가 싶고, 아내와 딸이 원망스러웠어요.

**곽배희 소장** : 경찰이 왔었던 때가 부인하고 처음으로 싸운 것은 아니셨겠죠?

**김○○** : 네, 처음은 아니었어요.

**곽배희 소장** : 우리나라 정서상 가정폭력이 처음 발생한 때 신고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상당히 여러 번 지속적으로 폭력이 반복되고, 김○○씨는 눈치를 못 챌겠지만 가족 구성원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을 때 신고한 것 같아요.

김○○ : 네, 그런 것 같아요.

**곽배희 소장** : 지금 김○○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힘들고 외로우셨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밖에서 나쁜 짓, 잘못된 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가족 구성원들이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셨나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 가족들은 남편 또는 아버지의 그러한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가정에서는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정 내에서 혼자 아무리 헌신하더라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납득하고 이해해주지 않으면 나는 혼자서 외톨이가 되거나 공중에 봉 뜨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김○○씨가 그런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혼자서 열심히 성실하게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고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에 와서 보니까 가족들이 나의 뜻을 몰라주고,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어떤 때는 배신감을 느끼고 코너로 몰리신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김○○씨가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씨도, 부인도 가슴 속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벗어나다가 결국 균열이 생겨났고, 그런 것들이 밑바닥으로 깔려서 상담소에 오시게 되었는데, 강의도 듣고 캠프도 가고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가정에 변화가 오던가요? 왔다면 어떤 변화가 오던가요?

김○○ :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에서 일을 해도 제가 잘하는 사람한테는 아무 말 안하는데 못하는 사람한테는 잘할 때까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도 계속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가족이기 때문에 너그럽게 생각하다가도, 막상 부딪히는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 성질도 급하니까...

**곽배희 소장** : 아, 그러니까 그런 변화, 김○○ 씨가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깨닫게 되니까 가족들이 나를 보는 시선도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김○○ : 네, 상담을 받다보니까 무언가 좀 깨닫게 되었고, 시청각 자료를 통하여 폭력을 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폭력을 당하는 사람은 상처를 받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보고 내가 실질적으로 폭력을 주먹으로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폭력을 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곽배희 소장** : 그것은 엄청나게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부인이

남편을 대하는 태도도 과거와 달리 마음이 조금씩 열리지 않았나요. 김○○씨는 어떠세요? 처음부터 김○○씨는 여러 가지로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상담소 프로그램을 다 이수하면서 뭔가 내 자신에게 변화가 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김○○ : 네, 이제 뭔가 내려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상담소와서 제대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와 가족들은 저의 변화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각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곽배희 소장** : 한꺼번에 많이 변하는 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 한꺼번에 나 이렇게 많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아마도 신뢰감을 덜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씨처럼 조금씩 조금씩 변하는 것이 훨씬 더 신뢰감을 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상담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폭력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게 되었고, 직접 사람에 대한 어떤 행위가 아니더라도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것, 벽을 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것들도 폭력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 같아요. 그렇죠?

김○○ : 네, 전에는 폭력을 많이 썼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폭력이 늘고 있다는 걸 상담소에 와서 알게 되었어요.

**곽배희 소장** : 그러니까 상담소 온 후 가정 분위기나 부부 관계 등이 나름대로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 이○○씨는 어떠세요? 아내와의 성격 차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았는데, 상담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 처음에는 폭력에 대하여 잘 모르다가 상담소에 와서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상담소에 오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화도 나고 그랬지만 조금씩 알게 되었고, 상담이 끝나고 나서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알게 되더라고요. 상담위탁기일이 끝나도 상담에 참석해도 된다고 했지만 강제가 아니니까 내 스스로 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소에서 받은 상담이 계기가 되어 저는 아내와 다른 곳에 가서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곽배희 소장** : 폭력은 나쁜 것이다, 범죄다, 벽을 치고 물건을 던지고 상대방에게 하는 사소한 몸짓 하나도 폭력이며 그러한 폭력은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은 우리 상담소에 오셔서 느끼

신건가요?

이○○ : 네.

**곽배희 소장** : 그런 것을 느끼시면서 아내에 대한 말투나 행동에도 변화가 있었나요?

이○○ : 제가 변했고, 또 그 결과 지금 아내도 완전히 변했어요. 아이들도 변했고...

우리나라가 술을 배우기는 정말 쉬운데 술을 끊기가 힘들 정도로 한 골목에 술집이 하나씩 있거든요. 제가 한번은 술을 끊었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다시 한잔 먹게 되니까 가정폭력이 또 일어나게 되었고, 그 후로 지금은 완전히 술을 먹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술을 먹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술을 배우기는 쉽지만 술을 끊기가 어려운데 아빠를 보고 못 느끼겠냐고 했죠.

**곽배희 소장** : 그 말씀은 아주 좋으시네요. 그래도 이○○씨 입장에서 술을 배우기는 쉬워도 끊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신 것 자체가 술을 끊을 수 있다는 의지를 심어주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술을 끊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씨에게 많은 변화가 왔고, 나 자신에게 변화가 옴으로써 아내에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왔다 이런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김△△씨 오셨습니까. 비가 많이 오죠?

김△△ : 네, 오고 있습니다.

**곽배희 소장** : 김△△씨는, 결혼 생활하신 지 얼마나 되세요?

김△△ : 올해가 3년째입니다.

**곽배희 소장** : 다른 세 분 보다는 결혼생활이 조금 짧으신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생활에 짜증이 많이 나셨나봐요?

김△△ : 저는 물질적인 도구를 통한 것만이 폭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내를 때리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지는 않았는데, 경찰서를 거쳐 법원까지 가게 되었어요.

**곽배희 소장** : 왜 그러셨을까요? 혹시 무슨 이유였는지 기억나세요?

김△△ : 그러니까 술이 문제죠. 아내하고 술을 먹다가 집에 와서 대화중에 집안 문제나 좀 안 좋은 일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폭발하게 되어서 상담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상담처분은 저만 받았지만 부부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석했어요. 제 경험으로는 부부가 함께 교육을 받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곽배희 소장** : 그러니까 교육강좌 수강, 개별상담도 하셨고, 집단상담도 하셨네요?

김△△ : 네, 저는 다 끝냈습니다.

**곽배희 소장** : 상담을 받으니까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김△△ :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곽배희 소장** : 상담을 통해서 어떤 점이 많이 변했을까요?

김△△ : 첫째로는 제가 많이 변했지만, 아내도 많이 변했어요. 남자들은 말로는 여자들에게 지게 되잖아요. 싸움 끝에 그 자리를 잠시 피해보고자 해도 여자들은 못나가게 하고 쫓아오고, 상담소에서 교육을 받고 부부싸움을 할 때는 조금 쉬는 시간을 갖자는 것에 합의하였고, 다른 부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처분은 저만 받았지만 폭력을 하게 된 데는 부부 모두에게 원인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곽배희 소장** :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아내가 어떻게 말을 하거나 행동하면 화가 나던가요?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김△△ :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기분이 좀 안 좋으니까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면, 아내는 그때 빨리 이야기를 해서 다 풀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 때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거든요.

**곽배희 소장** : 그 때 내가 기분이 안 좋은 것은 아내와의 사이에서 기분이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밖에서 기분이 나빠 들어왔는데 아내는 남편의 그런 기분을 짐작도 못 하고 그냥 계속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김△△ : 아, 네... 그런 경우도 있죠.

**곽배희 소장** : 그 내용을 보면 아이 문제, 경제 문제? 아니면 시집 문제 등등 이겠지요?

**김△△** : 제가 막내지만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거든요. 저는 몰랐지만 고부갈등도 있더라고요.

**곽배희 소장** : 그 점에서 아내는 스트레스가 많았겠네요. 사실 장남만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되는 사람이 모시는 건데, 우리 사회의 정서나 관습은 은연중에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관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 남편이 막내인데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그러면 인간이 나빠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그런 불만이 있어요. 그게 마음속에 쌓여 있는데, 남편은 술 마시고 온다 그러면 이야기할 곳이 없잖아요. 이야기하고 싶는데 남편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나중에 하라, 아니면 듣기 싫다고 하거나 나가버리니 화가 나는 것 아닐까요?

**김△△** : 그 상황에서는 너무 같이 부딪혀버리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싸울 수밖에 없죠. 상담소에서는 아내도 그 점을 이해해 주고, 나도 아내를 이해하게 되어 좋아진 것 같아요.

**곽배희 소장** : 어떤 경우에 여자들은 경우에 따라 지혜롭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잠깐 심표를 갖는 건 좋은데, 너무 화가 나니까 낮에 남편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만난 김에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 점들에 무심했던 것들을 상담소의 상담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되고, 내가 변하니까 아내와의 관계도 달라졌네요.

**김△△** : 네.

**곽배희 소장** : 네 분이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하시네요. 내가 전에는 이것이 폭력인 줄도 몰랐고, 결혼 생활을 하다보면 이 정도의 화가 났을 때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폭력이라고 해서 어느 곳에 가서 상담 받으라고 하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이게 뭐가 싫기도 하고, 내 안의 내가 조금 손찌검을 했기로, 폭언을 좀 했기로, 뭐 그런 게 죄인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상담소에 오셨네요. 그런데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전문가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폭력의 범주에 들어가는구나 하고 느끼신 거죠?

**모두** : 네.

**곽배희 소장** : 여기까지만 해도 저희들은 굉장한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네 분께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만일 지금 나처럼 상담소에 올 상황에 처한 내 친구, 선배, 동료, 후배가 있다면 뭐라고 말씀해주고 싶으세요?

**김□□** : 이전에는 내가 한 행동이 다 옳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상담소에 와서 돌이켜보니 가족들이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를 내려놓으니까 낫더라고요. 아내도 같이 부부상담을 받으면서 내가 장미 백 송이를 주겠다고 하고는 주지 않더라고 했어요. 사실 나는 그런 말 한 것이 기억도 안나는데 그런 소리를 하기에 얼마 전 결혼기념일에 장미 백 송이를 선물했더니 아내가 참 좋아하더라고요. 또 내가 몸이 안 좋을 때 아내가 어루만져주었는데 참 좋았어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단순한 일 같지만 가족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보고, 내가 옳더라도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치를 생각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가족들에게 아픔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곽배희 소장** : 이○○씨는 어떠세요? 지금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이○○** : '술을 먹어도 될 수 있으면 피해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곽배희 소장** : 굉장히 좋은 말씀이네요.

**이○○** : 왜냐하면 저는 거의 술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화를 할 때 화가 나면 저는 피했어요. 힘들지만 피하고 나면 나중에 아내가 와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큰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말하고 싶고, 전에 상담소 오기 전까지는 그런 것을 잘 몰랐어요. 제가 상담 받을 때 아내는 스스로 다른 곳에 가서 상담을 받았나 봐요.

**곽배희 소장** :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두 분 모두 많이 애쓰셨네요.

**이○○** : 네.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잘

못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자주 부딪히고, 대화를 하면서도 안 통했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에서 대화가 안 통했구나' 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곽배희 소장 :** 나와 같은 입장에 있는 분에게 절대로 술 마시고 대화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갈등이나 마찰이 있을 것 같으면 피하라고 말씀하고 싶으시군요. 김○○씨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김○○ :** 돈을 불리기 위해 탐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주식을 하다가 몇 천 만원 날렸습니다. 원인을 다 내가 제공했으니까요. 제가 지금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곽배희 소장 :** 나와 같은 사람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죠?

**김○○ :** 네,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게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곽배희 소장 :** 김△△씨는 나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김△△ :** 저는 주변의 친구들에게 진실 되게 이야기하라고 조언합니다. 100은 아니더라도 90 이상은 진실 되게 이야기하라고요. 그래야만 서로가 하나씩 하나씩 고집어내면서 풀어진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리고 상담처분은 혼자 받더라도 될 수 있으면 몇 주 후 아내를 동행하여 함께 상담을 받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곽배희 소장 :** 네, 그러시군요. 네 분 모두 상담소에서 하고 있는 개별 상담, 집단 상담 등에 참석하셨어요. 프로그램에 참석하면서 나 자신도 변화되었고, 나 자신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가정도 변화되었고, 특히 부부관계가 나름대로 향상되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담소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니까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상담소에서 좀 더 배려하거나 보완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이○○ :** 처음에 상담소에 왔을 때는 내가 왜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굉장히 억울한 점이 있었는데... 상담을 띄엄띄엄 하기보다는 이어서하면 상담 효과가 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요. 차라리 일주일에 저녁 몇 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몇일간 몰아서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집단 상담에 참석해보니 부부들 문제는 다 똑같아요. 공통점이 있더군요.

**곽배희 소장 :** 그게 집단상담의 효과예요, 다른 부부를 통해서 우리 부부의 모습을 투영해보는 거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부가 하는 대화를 들어보면, 아 저때는 내가 이렇게 말했지, 저 때는 저렇게 말하니까 듣기가 거북하네, 이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상담의 효과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부가 같이 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이○○씨가 그걸 느끼셨네요?

**이○○ :** 네, 결국 남자들이 오기 싫어하지, 여자들은 참여하고 싶어 하고 굉장히 적극적인데, 남자들은 여자들이 오면 자존심 상해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폭력을 당한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어요.

**곽배희 소장 :** 네, 다른 분 생각은 어떠세요, 무언가 좀 아쉬웠다 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김○○ :** 상담소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여기 안 온 사람들은 모르는 경우가 있기에 공익광고 하는 공익협의회 같은 곳과 협약을 맺고 세상,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상담소를 많이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의 기본 뿌리는 사실 서로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돈이라든지, 질서라든지요. 이런 것들이 밑바탕에 깔려 폭력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폭력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렵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폭력의 밑바탕에 깔린 것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요. 이 원인을 치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개월이나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스트레스도 많고요.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일주일은 힘들겠고, 상담을 한 달에 몰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김□□ :** 저는 부부가 같이 상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한 사람이 폭력을 행사해서 상담소에 왔지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부부가 함께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 집단상담을 하면서 어떤 부부는 관계를 좋게 하려고 노력하니까 좋은 결실이 있고, 또 어떤 부부는 자기 고집에 마누라 탓이다, 남편 탓이다 하면서도 남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을 보고 단체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참 부끄럽지만 상담소에 와서 인생공부를 한다는 생각도 들었고, 창피하다는 것을 떠나서 가정을 다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김△△** : 저희 부부는 집단상담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유능한 진행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것은 폭력으로 처벌받아서 왔지만 상담소 이름을 좀더 부드럽게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행복' 처럼요. 그래서 친구나 지인 등 주변사람을 편하게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정법률상담소로 이름이 되어 있으니 사람들의 인식이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곽배희 소장** : (웃음) 그래도 기관명은 바꿀 수 없어요. 프로그램 이름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해볼게요.

**김△△** : 네, 그리고 시청각 교육을 했는데 비디오가 오래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여자가 폭력을 하기도 하는데 비디오에는 요즘 트렌드에 맞추지 못하고 주로 남자들만 나오더라고요. 그런 점들을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김밥 주나요? 저는 간식거리를 신경써 주는 것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의도 가정법률상담소가 다른 곳에 비해 건물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곽배희 소장** :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분이 상담소 홍보대사로 나온 줄 알겠어요.

**김△△** : 저는 무얼 잘 해서 상담소에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큰 죄를 지어서 온 것도 아닌데, 다른데 가서도 상담소에 경제적 지원을 좀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해주고 싶어요.

**김○○** : 요즘은 남자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크게 부각되고, 여자들은 반대로 되어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담회를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부캠프에 가서 보니까 여자들이 더 센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남자들은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를 받아요. 그걸 보니까 남자들이 참 비참해 보이더라고요. 여자들은 약한 존재니까 좀 잡아주고, 남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있더라고요.

**곽배희 소장** : 솔직히 그렇습니다. 시대가 바뀌다보니까 갑작스

럽게 많은 것이 달라졌는데 달라진다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현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현재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남성 중심의 제도나 법이 바뀐다는 것, 결국 양성 평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구속받고 억압받던 여성들은 우리 세상이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저희가 결코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남성들이 경제 활동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법이나 제도, 관습이 평등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남성들로 하여금 절망과 좌절을 느끼게 하지만 저희는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봐요. 내 세상이 왔다고 날뛰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데, 만약 여성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남성과 여성의 위치가 뒤바뀌게 되면서 결국 지금까지의 상황이 다시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는 것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느 누구도 구속받고 억압받는 상황이 오지 않게 하자는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러한 상황에 놓인 것이 주·객관적으로 여성이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상담소가 바라는 것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느 누구도 구속받고 억압받는 상황이  
오지 않게 하자는 겁니다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했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것이 뒤 바뀌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간혹 하지요. 가정문제 상담을 하면서 40-60대 남성들이 어렵다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압니다. 20-30대는 적당히 눈치 보면서 분위기에 편승해서 아내 비위도 맞추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아내 비위 맞추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 점점 소외되고, 뒤로 물러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무조건 좌절하고, 위축되고, 내가 자존심 상한다, 이제 우리들 시대는 지났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숨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대, 법, 제도가 변했다면 왜, 무엇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들여다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변했을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변했는지,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배워둔다면 절대 남성들이

멀리거나, 소외당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성들이 앞서 나가는 것은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TV에서 하는 강의를 보면서도 여성들은 금방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남성과 여성에 관해 강의를 한다거나, 인류의 진화에 대해 강의를 하는 경우에 귀담아 들으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저게 다 무슨 소용 있냐고 하면서 치워버리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여성하고 같이 나가기 어렵습니다. 열심히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과 변화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분과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뒤쳐진 사람도 없고, 너무 앞서가는 사람도 없고, 부부가 서로 똑같은 라인에 서서 공통의 목표를 바라보며 같이 나가게 만드는 것이 저희 상담소의 일이고, 그 중의 하나가 가정폭력에 관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가정폭력과 관련해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잘 짚어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상담소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처음부터 부부가 함께 와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별도의 법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해요. 국가에서 법에 따라 하라고 하는 부분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폭력행위를 한 사람을 상담을 받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처음부터 아내와 함께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에 따라 오시는 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 상담 참여를 권유하고 동의를 받아 상담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부가 상담소에 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막상 연락을 하면 부부 10쌍을 모으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여러 개 만들고 싶지만 첫째로는 오시는 분이 없고, 두 번째로는 인력과 재력이 부족해서 이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말씀 해주시니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와서 프로그램을 받고 '아, 나는 끝났다, 이제 가정법원에서 내린 상담처분에서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이게 문제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상담소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고, 우리가 한 일들이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해주신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프로그램을 마친 부부를 모시고 싶어요. 여러분처럼 부부가 함께 와서 그동안의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부부 캠프나 부부 집단상담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끼리끼리 모이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장소를 상담소로 정하실 수도 있고, 또 상

담소에 의뢰를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담소에서 연락하는 것은 연락받으시는 분들이 내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으시면서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모임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상담소에서 장소도 제공해드리고, 원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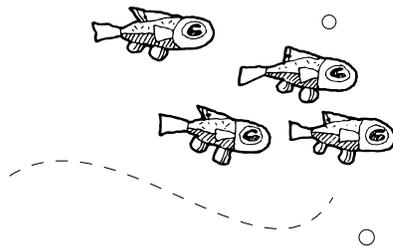
**모두 :** 좋은 생각이죠.

**이○○ :**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니까 서로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부부캠프 다녀온 이후 부부가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표현을 하게 돼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았던 상처가 드러나서 저와 대화를 하면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처럼 느끼더라구요.

**곽배희 소장 :**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에 상담소에서 같이 대화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오세요. 만약 두 분이 대화를 잘 하고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고요. 여기 모인 네 분 모두 무슨 일이 있지 않아도 언제든지 상담소의 문은 열려있습니다. 저희로서는 네 분, 아내까지 포함하면 여덟 분이 큰 인적 자산이죠. 우리의 식구가 되신 거예요. 가정문제가 아니어도 타인과의 문제, 재산상의 문제 등도 도움을 받고자 하시면 오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것에 대해 성심성의껏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런 자리 갖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막상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역시 잘 왔다 하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는 웃을 일만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인간이다 보니까, 또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 사소한 갈등과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부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소로 찾아주시면 저희는 만사 제쳐놓고 도와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모두 :** 감사합니다.

박소현 법률구조2 부장  
차연실 상담위원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제5강\*\*

## 분노의 의미와 기능

김 병 후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분노는 보통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 분노를 느끼는 개인의 삶을 지키기 위해 작동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폭력을 동반한 분노는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런 부작용을 제거한 분노는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당사자뿐 아니라 관계를 맺는 상대방에게도 긍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분노의 진정한 목적은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대부분 화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관계도 깊어지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 만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남성과 여성은 화를 내는 영역에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상대가 어떤 때 화를 내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면 굉장한 화를 내게 됩니다. 여성들은 관계가 우선이기에 관계에서 개인을 우선하는 남성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싸움 도중 남편이 아내와 대화도 되지 않고 더 이상의 충돌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더 이상 싸움이 진

행되다가는 서로의 격한 반응이 부부관계에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대화가 끝나지 않았다고 절대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나는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주말이지만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평일 내내 직장에서 일하고 휴일밖에 시간이 없어 나가려고 하는데, 이를 못하게 합니다. 그럼 철없는 남자들은 '아내가 무슨 권리로 나를 못 나가게 해?'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주중 내내 혼자 힘들게 자녀를 돌보면서 밤늦게 귀가하는 남편을 일주일 내내 기다렸는데, 주말에 남편이 당당하게 혼자 나가겠다고 하면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로에 대해 화가 납니다. 이럴 경우 아내가 화낸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답은 '아니다'입니다. 남편이 주말에 육아를 돕지 않고 나가 아내 혼자 또 자녀를 돌봐야 한다면, 당연히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경우 휴일에 외출하고 싶은데 아내가 반대해서 못 나간다면 그 화는

\*\* 올해 본소의 무료공개강좌인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는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원장의 강의로 2월부터 12월까지 (8월 휴강) 10강에 걸쳐 진행된다.

정당한 것일까요?

기쁨, 슬픔, 놀람, 혐오, 공포 그리고 분노 등 이 여섯 가지 감정은 개체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만들어 집니다. 이런 감정은 동물이 먹이를 구하거나 도망가는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먹이를 구하면 기쁨이, 잃으면 슬픔의 감정이 나옵니다. 먹이를 구하거나 천적을 피하는 과정에서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예민해지는 등 스트레스반응이 나옵니다. 분노를 느낄 때와 비슷한 신체 반응입니다. 공격을 당하면 당연히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분노는 행동제한뿐 아니라 공격을 당할 때도 자동으로 나옵니다. 아내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남편에게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힘들어서 말하는데 남편은 이를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잔소리, 짜증, 시택에 대한 불만 등 많은 것들이 광범위한 공격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부부는 서로 불만을 토로할 때, 상대가 이를 공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요구하는 신발 정리를 하지 않는 부인에게 분노를 느끼는 남편이 있습니다. 육아에 바빠 집안 정리가 되지 않고 가사를 등한시 하는 것 까지는 이해하겠답니다. 하지만 신발정리까지 하지 않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신발정리는 자신이 해보니 1-2분이면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아내는 쌍둥이 두 명을 양육하느라고 남편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신발정리, 아이들 장난감 정리, 냉장고에 음식이 상할 때까지 두지 않기 등 남편의 요구는 모두 옳지만, 현실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사회적 약속은 많지만, 그 우선순위는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자신이 학생일 때와 자신이 부모일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느냐의 중요성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관점에서 옳은 것을 상대가 듣지 않는다면 화가 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상대에게는 그 일이 우선순위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나 상대가 중요하다는 그 일을 하려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무언가를 우선순위에서 뒤로 돌려야 합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인에게는 신발 정리보다 아이들 뒤치다꺼리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나 배우자에게 어떤 일을 요청할 때 나에게는

필요한 것이지만, 상대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앞서서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우리의 뇌는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을 대부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저장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대부분의 행동은 자동 프로그램 되어 있듯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적 행위를 타인의 요구로 바꾸기 위해서는 인지적 집중을 통해 교정해야 하는데 이러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의 행동에 대해 너무 쉽게 교정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들어 주지 않으면 불만을 표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혹은 배우자의 입장에서 상대 행동의 잘못을 말하는 것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행동의 제한일 수도, 공격을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노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1차적 감정이면서 사회적 감정입니다. 1차적 감정에서의 분노는 공격당하거나, 행동이 제약받는 경우 발생합니다. 동물은 밧에 걸렸을 때 행동이 제약 당하기 때문에 큰 분노가 발생합니다. 이 때 동물에게 행동 제약은 생명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의 연장선이 인간들에게 있는 여러 행동규제입니다. 주말에 밖에 나가지 말라는 아내의 말이 행동 제한으로 인식되면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행동규제는 본능적 분노를 유발하기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에게 하교 후 외부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행동제약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는 아이들의 본능적인 분노를 자극하게 되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엄마에게는 공부를 해야 하기에 노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외부활동을 하지 말라는 잘못되지 않은 엄마의 말이, 아이 입장에서는 행동 규제가 되어 동물이 밧에 걸렸을 때와 같은 격렬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자도 행동규제에 대한 분노를 느끼지만, 자유행동이 중요하고 개인주의적인 특성이 강한 남자들의 경우 이러한 분노가 더욱 잘 발현됩니다.

행동제약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나 공격당할 때의 분노 반응 모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동물은 자신에게 행동제약이 걸리면 죽음과 연관되기에 이에 대한 방어기제로 분노를 느끼는 것이며, 인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인간의 경우, 또 하나의 본능적 분노가 있습니다

다. 그리고 이 분노는 특이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러한 예는 실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일을 잘못처리 했을 때, 판단을 잘못했을 때 주로 이 분노가 발생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사람들은 일을 신중히 처리하려 합니다. 혹시 일을 비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손해를 발생시킬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예측을 잘못하면 죽음과 연결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본능은 처절합니다. 이것이 인간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항상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최선을 선택하지 못하거나 효율적이지 못한 판단을 내렸다면 자기 자신에게 가혹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를 향한 분노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나옵니다. 자녀에게 잘 나타납니다. 부모는 자녀가 효율적이지 않은 선택이나 행동을 할 때 강한 화를 내게 됩니다. 이 분노는 자신을 향한 분노이므로 화를 내는 당사자는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실수하지 말라, 공부에 집중하라'고 충고합니다. 자녀에게 효율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조언이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문제 있다고 자기를 공격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부모들은 자녀가 이렇게 느낀다는 것을 모른다는 점이며, 세상 대부분의 부모자녀간의 갈등은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자녀들이 힘든 것은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인정받고 싶어 하는 부모의 판단이 자신이 늘 잘하지 못한다고 비난하고 화를 내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일은 부부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결혼 생활 중 배우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효율성의 관점에서 지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자신의 효율성에 대한 분노지만 배우자는 이를 가혹한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자기분노에 대한 변형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격의 형태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의도가 없지만 상대방은 이에 큰 상처를 받는다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 청소년 상담에서 모든 아이들이 이 같은 고민을 토로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자녀들은 갈등 상황에서 반항으로 길을 잃고 큰 상처만 받고 부모 자녀 사이만 틀어지

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적 분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사회적 분노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에 대해 살펴봅시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우리는 강한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나 공분할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본능적 분노를 가집니다.

사회적 분노의 다른 예로, 추석 귀향차량들로 밀리는 도로에서 어떤 차가 갓길로 주행하는 것을 보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들 수 있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의 뇌는 그 사회를 어지럽히는 누군가의 행동에 본능적으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의 구성원들은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거나 도가 지나친 행동을 서로 자제시키고 또 스스로 자제하게 됩니다.

이렇듯 자율적으로 사회적 정서에 의해 조절되던 반사회적 행동이 역으로 법치국가가 되면서 많이 발현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다보니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제재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이 길거리에서 큰 소리를 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그 행위를 막기 어렵습니다. 한 개인의 무례한 행동도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그리스 시대에는 누군가 사회질서를 위반하면 조개 껍질에 이름을 적도록 하여 일정 수준의 시민들이 찬성하면 그 사람을 사회에서 추방하였고, 에스키모 인들의 경우 구성원 누군가가 심각하게 사회질서를 위반하면 암암리에 사냥을 나가 그 사람을 총을 쏘아 죽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과거 법적인 제제가 미비하였을 때에는 집단 내 사람들이 질서를 위반하는 자를 추방하여 사회가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법이 있는 현대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그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새롭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회에서 명망 있는 사람이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 경우에 이러한 사회적 분노가 대중들에게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사회적 감정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얼마나 건강하게 작동되는가 하는 것이 한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합니다. 사회적 분노가 오작동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마녀 사냥입니다. 이럴 경우는 사회적 분노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회적 분노가 나타난다고 무조건 그 분노가 옳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모두 내면에 사회적 분노가 있습니다. 사회적 질서에 어긋나는 사람이 있을 때 강한 반감이나 분노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는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분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포유동물의 사랑의 행위는 스킨십입니다. 인간의 경우 뇌와 뇌, 즉 변연계와 변연계가 연결되는 것이 사랑의 행위인데, 변연계에 일어나는 감정이 얼굴에 나타나고 이를 상대의 신경세포가 읽어 순환이 생기면 뇌에 공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같이 사랑은 인간과 인간이 결합할 때 나옵니다. 이 관점에서 분노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관계적 분노는 그 결합이 불공정하거나 불통일 때 나옵니다. 관계가 불공평하다고 느껴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껴도 화가 납니다. 그렇다면 관계에서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답은 관계를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친한 사람으로부터 그에 맞지 않은 대우를 받으면 분노를 느낍니다. 이 분노는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분노를 느끼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끊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분노를 느낄 때마다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면, 상대는 공격을 당했다고 생각하여 되공격을 하고 그러면 불행한 싸움으로 진행됩니다. 분노를 느꼈을 때 가장 긍정적인 대처방법은 상대방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며, 가장 부적절한 대처방법은 상대방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관계를 끊거나, 다른 일을 빌미삼아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분노의 발생 자체는 인간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분노는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며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인 관계를 형성했다고 하면, 관계가 형성된 후에 두 사람 사이에는 '암묵적으로' 서로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일종의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양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까다로운 반면 어떤 사람은 관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본인이 규정한 관계에 대한 마음속의 정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는 부부관계, 배우자의 원가족과의 관계,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 대한 정의는 모두 은연중에 만들어지는 것이고, 명확히 규정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모르는 관계의 정의를 서로들 하고 삽니다. 그 정의에 맞지 않으면 분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상대는 그 정의의 룰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며 하루에도 수없이 관계를 맺고 살고, 그만큼 많은 수많은 분노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분노를 느끼지만, 그것의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합니다. 화는 어느 정도까지는 자연적으로 소멸되지만, 어느 수준을 넘어서 이후에는 축적됩니다. 이렇게 축적된 것이 인생을 통해 지속되어 잘못 발현되면 소위 '묻지 마 살인' 등의 기이한 형태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누적된 분노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라도, 누구나 자기 각도에서 보면 어떤 점이 불공정하기 마련입니다. 이 불공정을 교정하는 것은 평상시에 자신이 느끼는 분노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며, 피해야 할 것은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분노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의 관점에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관계에서 상처받았다고 하면, 상처받은 사람의 입장이 옳다는 가정 하에서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들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툼의 과정에서 입을 다무는 한 가지 이유는, 상대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만 증명하려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상처와는 관련 없는 이야기만 하니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얘기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교정하는 방법은, 이전과는 달리 잘 들겠으니 다시 한 번 얘기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화'라는 감정은 불공정한 부분에 대한 격앙된 감정이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과장되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나의 분노를 '감정적이지 않게'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나의 분노가 해소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의 분노도 해소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50만쯤 상처를 주면 나도 50만쯤 되돌려주고, 또 100만쯤 화내면 나도 100만쯤 반응해야 직성이 풀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화가 난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

지 않고, 화가 나서 발생한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서로 공격적인 말만 주고받게 되고, 결국 두 명 다 상처받는 악순환만 반복됩니다. 화가 난 원인을 다루어야지, 화가 난 상태에서 '왜 소리 질러?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등 상대방의 화난 태도에 집중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화를 참는 사람들, 순한 사람들의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화가 누적되면 사소한 일에도 강한 분노를 표출하거나 관계를 단절합니다. 자신을 잘 들어주지 않는 부모 하에서 자란 사람들에게서 잘 나타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의 원인을 찾아서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경험을 여러 번 해보아야 합니다. 이런 여성들의 경우, 불만을 누적시키고 살다가 남편에게서 외도의 징조를 발견하면서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외도 쫓 되는 잘못을 저질러야만 말할 수 있다는 무의식적 열등감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이 때 아내는 외도에 대한 것은 사소한 것도 격양되게 문제를 제기하는데, 사실은 부부관계 속에 내재된 진정한 부부갈등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치유해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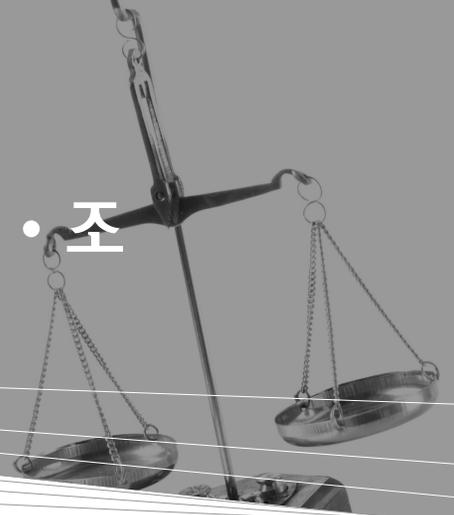
인간은 나와 상대가 서로 소통한다고 느낄 때 행복감과 안락감을 느낍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이를 불통에 의한 분노라고 합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화를 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내들은 남편과 함께하고 싶지만,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소통하기 어렵고 답답하다고 합니다. 반면, 남편들은 "내가 다 같이 해주는데 뭐가 문제지?"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교류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의 분노이며, 특정 친구와 함께 있는데 재미는 없고 불편하다면 같은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거의 인식하지 못했지만, 오늘날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기다보니 이런 문제들이 부각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분노이외에 병적인 '도구적 분노'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정적 폭력'으로, 싸움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도구적 폭력'으로, 상대를 다루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부정적인 폭력입니다. 회사와 군대에서 다수 일어나며 분노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억압하고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는 폭력적인 태도입니다. 사회

가 발전하지 않은 '후진국 형' 통치도 이에 해당합니다. 유연한 환경과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결과를 내는 현대사회에서 도구적 폭력으로는 성과를 창출하기 어렵습니다.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적인 상황으로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것은 결국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구적 폭력을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에게 행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정 호르몬(바조프레신)이나 남성호르몬의 과다 분비로 폭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남성호르몬이 높으면 분노를 쉽게 표출합니다. 세로토닌은 분노를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이 수치가 낮아질 때 분노와 우울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때리는 경우 우울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을 높이는 약을 처방하면 이러한 현상은 금방 사라지기도 합니다. 화를 잘 내는 직장상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 수 있습니다. 월경 전 여성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지면서 우울감, 짜증, 분노를 쉽게 표출하기도 합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감정의 변화가 심하다는 것은 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분노조절기능을 해제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족이 공격을 당하거나 다쳤을 때 분노조절기능을 해제시키고 가해자에게 극심한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애착형성이 잘 이루어지면 분노가 잘 표출되지 않지만, 애착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감능력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분노가 병적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감 받지 못하고, 인간에 의해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결국 자신이 지금까지 받아온 상처와 분노를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하게 됩니다. 이들이 묻지마 범죄를 일으킵니다. 이들에게 타인은 사람이 아닌 물체일 뿐입니다. 앞으로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인간관계가 더 단절되면, 이런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자신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모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 이외의 다른 모든 이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특히 본인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좋아야 합니다. 우리는 역설적으로 가장 사랑을 받는 가족 내 관계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더 많은 대화와 활동을 나누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 아내와 자녀에게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남편에 대해 이혼 등 조정

법률구조 2015-209

담당 : 유유희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36세)와 피고(남, 36세)는 2008년 6월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1(여, 9세)과 사건본인2(여, 4세)를 두고 있다. 원고가 사건본인1을 임신하였을 때, 피고는 경제활동은 하지 않은 채 게임에만 몰두하였다. 또한 피고는 평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화가 나면 원고와 사건본인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였다. 피고는 2010년 2월 아무 이유도 없이 원고의 목을 졸랐고, 2010년 8월에는 사건본인이 잠을 자다 운다는 이유로 원고를 폭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2011년 3월 원고와의 싸움 도중 사건본인을 안고 있는 원고를 집밖으로 내쫓아 원고가 긴급피난처에 입소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더 이상 피고의 폭력적 행동을 참기 힘들어,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성립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5. 12. 3.)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서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
3. 사건본인들의 양육권은 원고로 지정한다.
4. 사건본인들의 친권은 공동친권으로 한다.
5. 사건본인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까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사건본인들이 중학교에 입

학할 때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매월 1인당 35만 원씩 매월 1일 또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6. 면접교섭은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일요일 오후 5시까지 면접교섭을 하고, 피고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로 데리러가고,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한다.

나. 사건본인들이 면접교섭 이외에 피고와 만나고 싶다고 하면, 원고는 적극 협조한다.

다. 면접교섭 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 최소한 3~4일 전에 상대방에게 알리도록 한다.

라. 피고가 사건본인들에게 자유롭게 전화할 수 있도록 원고가 협조한다.

마. 설 명절 기간은 원고와 지내도록 하고, 추석 명절 기간에는 피고와 지내도록 한다.

7. 원고와 피고는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상호간에 일체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8. 소송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월40만원으로 조정되었던 양육비를 월70만원 지급하도록 판결

법률구조 2015-192

담당 : 강영화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증액청구

내용 : 청구인(여, 54세)과 상대방(남, 54세)은 1992년 1월 혼인해 슬하에 사건본인(남, 18세)을 두었지만, 이후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0년 3월

이혼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로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공동으로 지정되었으며, 양육자로는 청구인이 지정되었다. 또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0년 4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상대방은 수입 화물차로 개인 사업을 하며 상당한 월수입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후 5회에 걸쳐 총 2,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학비조차 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양육비에 대한 증액을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23)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15.5.3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700,000원씩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재산을 처분하고 20여년 전 외국으로 가버린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5-219**

**담당 :** 한은석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65세)와 피고(남, 74세)는 1971년 11월 혼인하였으나 1985년 7월 이혼을 하고, 1989년 3월 다시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결혼 초부터 도박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모두 탕진하였고, 1983년 미국으로 혼자 떠났다.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상가점포를 운영하며 자녀들을 홀로 키웠다. 1984년 피고는 원고에게 연락을 하여 영주권 문제가 있다며 이혼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서류상 이혼이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에 이혼요구에 응하였다. 1989년경 한국으로 돌아온 피고는 원고와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혼 후 원고가 매수하였던 아파트를 자신 명의로 변경하였다. 또한 피고는 1992년경 사업에 필요하다며 원고 명의의 가게마저 처분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와 상의도 없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혼자 미

국으로 가버렸다. 이후 20년 가까이 피고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을 유지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서울가정법원 2016.1.27.)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고맙습니다**

**2016년 6월 자원봉사자**

**•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인숙,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화, 유문숙, 이병주, 한정희, 홍진범 님

**• 주간상담을 해 주신**

강종협, 김정민, 김지후, 문석빈, 박수열, 박은정, 박효선, 이지선, 장세호, 정지윤 변호사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진아, 방선영, 이승주, 전성배, 천정환 변호사 님  
이진철 재판연구원 님

**•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을 해 주신**

리차드 윌슨, 임채룡 변호사 님

**• 학생 자원봉사**

윤혜정, 차혜진, 정주은, 이현지, 이지원, 남보라, 전해수, 전승민, 이도현, 김수현, 김유진, 심우봉, 허난영, 조혜린, 박평옥 님

**후 원**

**• 평생회원이 되신 분**

조춘범 님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천정환 님



# 엄마의 옷장



글 | 그림 | 장차현실



사람마다 상처를 이기는 방법은  
모두 다르다.  
그렇게 자신을 치유하려는  
노력은 모두 아름답다.





저는 사별한 전남편과 사이에서 딸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전남편은 제가 출산을 앞둔 시기에 사망하였고, 이러한 사정 때문에 남편의 형 부부가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아이는 제가 자신의 친엄마이고 사정 상 큰아버지 부부가 부모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는 이제 장성하여 성인이 되었고, 저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재일교포로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어, 저와 딸아이는 남편과 함께 일본으로 가 살려고 합니다. 이에 저는 제 친딸을 입양하였지만, 일본대사관에서는 성인이 된 후 입양을 한 자녀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아이가 제 친딸임을 밝힐 수 있을까요? 아이 큰아버지 부모도 아이가 자신의 자리를 찾아 일본에서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Q

A

호적선례 제2-429호는 “자기의 자가 타인의 친생자로 잘못 입적되어 있는 때에는 호적상의 부모와 그 자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호적정정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미 그 자가 자기의 양자로 입적되어 있다면 우선 입양무효를 이유로 양가에 입적된 그 자의 호적을 말소한 다음(이를 위하여 별도의 입양무효의 심판이 있어야 할 것임) 잘못 입적된 생가호적은 위의 호적정정절차에 따라 말소하고 새로이 그 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양가 및 생가에 입적된 그 자의 호적이 말소되기 전에는 다시 그 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됩니다(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참조). 귀하가 지금까지 자녀에 대한 출생증명서 원본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바로 할 수도 있으나, 만약 출생증명서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자녀에 대한 1. 성분 창설 및 2.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절차를 거친 후 3. 귀하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전남편과 혼인 중 포태한 자녀에 대해서는 귀하 전남편의 자료 추정되므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부모 란에 귀하와 전남편이 등재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에도 우선 1. 귀하와 자녀 사이에 입양무효 심판을 받고 2. 귀하의 자녀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김민선 변호사

# 상담소 소식

## ‘가족의 현실과 미래

### - 다시 “가족”을 이야기 한다’ 심포지엄 개최

본소 창립 60주년 기념 심포지엄으로 두 번째

지난 6월 22일 상담소에서는 창립 60주년의 해를 기념하면서 두 번째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가족의 현실과 미래 - 다시 “가족”을 이야기 한다’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1956년 창립 이래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부평등·양성평등한 가족의식 확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상담소가 60주년을 맞은 지금, 가족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왔고 그 미래는 어떠한 것인지 또 가족의 복리 수준 현황과 지향점은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다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이런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마련한 것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본소 광배희 소장이 좌장으로 진행을 하였으며 본소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60년 상담통계에 나타난 한국가정의 변천사’ 발표에 이어 정현숙 교수(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정유성 교수(서강대 교육대학원), 김혜영 교수(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여성가족부, 조영훈 교수(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상용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100여명 이상이 참석하여 주제에 관한 열띤 토론을 통해 가족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관련사진 2면)

## 미 대사관 관계자들 본소 방문

주한 미국인 및 국제결혼 가정의 법률문제 상담 등 협조 요청

6월 27일 주한 미국대사관 브루스 크래프트 영사와 박소정 특수영사업무 팀장, 양지연 미국시민업무과 팀장 등이

본소를 방문하여 헤이그아동탈취협약 관련 사건들과 주한 미국인 및 국제결혼 가정의 법률문제 등에 관한 상담과 조정 및 소송지원 등에 관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광배희 소장은 본소가 이미 영어법률상담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소송구조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 아동탈취 사건에 대한 화해조정 및 법적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업무협약 준비를 위한 실무자 회의

본소에서는 지난 6월 30일 본소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업무협약 준비를 위한 실무자 회의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는 본소 조정애 법률구조1부장, 조은경 상담위원 그리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 기획처의 육지완 차장, 양지수 차장, 박세진 과장이 참석했다.



## 교육부, 노숙인 신용회복을 위한 법교육 및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본소에서는 6월 24일 서울시와 공동으로 『노숙인 신용회복을 위한 법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교육에는 노숙인 시설 이용자 및 시설종사자 30명이 참석하였으며, 시설이용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각각 강의가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파산, 면책 및 개인회생관련 제도 안내」(본소 정연이 상담위원), 「신용회복 지원제도 안내」(신용회복위원회 이현주 심사역), 「주거복지 안내」(LH공사 서울지역본부 강서권주거복지센터 염재현 센터장)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신청안내」(건강보험공단 최윤정 과장)의 강의를 듣고, 강의를 끝난 후 개별적으로 파산·면책, 신용회복, 주거복지 및 건강보험 결손처분에 관한 상담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6월 23일에는 김병후 원장의 강의로 “마음읽기와 정신적 성숙”이라는 주제로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강의에는 총 60명이 참석하였으며, 참가자들은 타인의 마음을 고려하여 대화하는 법과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법에 대한 강의를 듣고, 각자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출장 법교육 및 본소 실습 활발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 사법연수원 전문분야실무수습(5월 30일~7월 22일)  
김범준 (사법연수원 45기)
- 동국대 현장실습 연수(6월 27일~8월 22일)  
윤여진, 이예진, 한지혜, 송희원, 신소현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6월 27일~7월8일)  
김주한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정연이, 황현정, 박소연 상담위원  
김민선, 황현정, 서지연 변호사, 오동준, 권혁채 법무관

## 출장법교육 및 상담

- 6월 7일 양육비이행관리원 임직원 대상 법교육  
-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6월 14일 학교폭력예방교육(창현초등학교)  
- 차연실 상담위원
- 6월 21일 학교폭력예방교육(수내초등학교)  
- 이지현 상담위원
- 6월 27일 용강노인복지관 출장상담  
- 서지연 변호사
- 6월 29일 학교폭력예방교육(상원고등학교)  
- 복미영 상담위원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6월7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직원 상담 역량 및 전문성 강화교육’에서 ‘법률구조와 법률상담기법’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 8일과 29일에는 서울 가정법원 조정을 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6월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연임되어 위촉식에 참석하였고, 24일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을 하였다.

## 곽배희 소장, 헌법재판소 정책자문위원회 참석 등

본소 곽배희 소장은 6월 1일 제26회 호암상 시상식 리셉션에 참석했다. 3일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현 선임 이사가장이 내소하여 법률구조 사업 전반에 관해 상호 적극적인 협조를 하는 것과 관련해 환담했다. 8일에는 이화여대 소식지인 <이화소식>과 인터뷰를 했으며, 19일에는 YTN 뉴스 ‘YTN 24’와 본소 창립 60주년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가졌다. 20일에는 헌법재판소 정책자문위원회에 참석했으며, 24일에는 <주간조선>과 우리 사회의 가족문제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27일에는 국제결혼과 관련한 업무협조 요청을 위해 내소한 미 대사관 브루스 크래프트 영사 등과 환담했다.



## 지부소식

### 강릉지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가사상담(총 2회), 가사조정(총 3회)을 실시하였다. 현남중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가정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총 5회, 165명).

### 구리지부

의정부지방법원 가사조정을 7회 실시하였다. 7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상담위원 위촉식에 참석하였다. 이경숙, 정수경, 김효경, 정이수, 장경아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 군산지부

6월 2일, 7일, 22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자녀양육교육과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18~19일에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위탁사업으로 이혼위기가정의 미성년자녀를 둔 부모 9가정을 대상으로 연수관에서 2016년 가족관계 힐링을 위한 캠프 “동행”을 진행하였다.

### 대구지부

11일~12일 부부캠프를 1박2일로 경주코오롱호텔에서 실시하였다. 11일, 25일 대구가정법원 협의이혼의무상담

제 주말프로그램 부모교육 “협력하는 부모”를 실시하였다. 허노목, 김인현, 신성욱, 이용원, 상무균 나만수, 이성림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 성남지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협력사업 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양육안내를 총 11회 실시하였다. 광주시법원에서 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양육안내를 실시하였다(총 7회). 성남시정보문화센터, 성남중앙도서관 등에 가정상담지, 상담소 리플렛으로 총 11회 홍보물을 배포하였다. 서현초, 판교초, 화랑초에서 폭력순회교육을 실시하였다(총 3개교, 15개 학교). 강은혜, 문대근, 공영서 변호사가 소송구조봉사를 하였다. 손수정, 송지민, 이경숙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 수원지부

수원지방법원 기관지정사업 협의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 양육에 관한 의무 면담을 총 12회 실시하였고, 6월 3일, 17일 수원지방법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23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강은혜, 김현명, 안정은, 장성근, 전성철, 전태우, 최강호, 최성중, 최유나, 한승일, 황미옥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 순천지부

6월 22일 2016 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 전국 7개 기관 관계자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 익산지부

6월 10일~11일 이사회워크숍을 개최

하였다. 22일 부송종합사회복지관 출장상담을 실시하였다. 28일, 30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 전주지부

6월 2일, 7일, 10일, 23일 전주지방법원 가사조정, 협의이혼상담을 실시하였다. 20일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검찰청 등에 가정상담지, 상담소 리플렛으로 홍보를 하였다.

### 제주지부

제주지방법원 협의이혼 전 상담을 총 10건 실시하였다. 강차선, 장부선, 김원배, 장영심, 함희복, 김순영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 중구지부

6월 15일 상담소 종사자 슈퍼비전을 실시하였다. 장상현, 박정두, 정수경, 김창건, 박은정, 장경아, 이동건, 임유정, 백준익, 여지은, 고승현, 홍지혜, 심미숙, 박수열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 진주지부

양임석, 장진호, 류기정 변호사가 소송구조 및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 춘천지부

5월 28일, 30일 한림대 사회복지전공 대학원생, 퇴계동주민, 6월 2일 13일, 20일, 24일 소양강댐孝나눔복지센터 노인, 석사동 무림개경로당, (사)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 노인대학학생 대상으로 법률강좌를 실시하였다.

## 2016년 5월 전국 상담통계

상담소 본부 및 전국 지부에서 2016년 5월 한 달 간 접수·처리한 총 상담건수는 13,023건으로 본부가 6,199건, 지부가 6,824건이었다.

본부는 5,696건의 법률상담 외에 화해조정 296건·소장 등 서류작성 163건·소송구조 44건을 처리하였으며, 지부는 법률상담 5,967건·화해조정 765건·소장 등 서류작성 39건·소송구조 53건을 처리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5,696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6년 4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이혼(23.5%→24.4%), 양육비(8.3%→9.1%), 인지(0.9%→1.1%), 친생부인(0.8%→0.9%), 친생자존부(1.6%→2.2%), 입양(0.9%→1.2%)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파산(3.4%→3.7%),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기타(0.4%→0.5%)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5,696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335건(23.4%), 전화상담 4,125건(72.4%), 통신 및 인터넷상담 232건(4.1%), 순회상담 3건(0.1%), 지상상담 1건(0.0%)이었다.

### 2016년 6월 본부 상담 통계

총상담 6,593			
법률상담 (6,099)			
면접	전화	통신	지상
1,463	4,367	268	1
화해조정		소장 등서류작성	소송구조
303		144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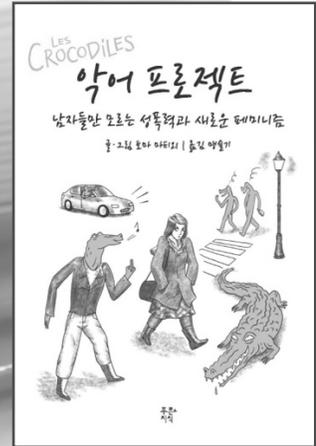
\* 2016/6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54,826건

지부	총상담	법률상담					합계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면접	전화	통신	서신	기타				
서울(본부)	6,199	1,335	4,125	232		순회 3 지상 1	5,696	296	163	44
강릉 (033) 652-9555	133	106	15				121	9	1	2
거제 (055) 633-7636	415	405	10				415			
광주 (062) 672-6011	66	28	38				66			
구리·남양주 (031) 551-9976	233	115	69				184	46	1	2
군산 (063) 442-1560	120	40	74				114	5		1
대구 (053) 745-4501	762	296	45			출장 340	681	80		1
대전 (042) 520-5258	271	48	219				267		4	
제주 (064) 753-9421	423	132	151			출장 8	291	130		2
동해 (033) 535-0188	116	50	65			출장 1	116			
목포 (061) 273-2514	109		107				107	1	1	
부천 (032) 667-2314	293	92	171	2			265	28		
성남 (031) 707-6661	369	204	77	6			287	79		3
수원 (031) 243-4600	482	125	169	1		출장 41	336	141	1	4
순천 (061) 753-9910	128	56	69				125	3		
충구 (02) 2238-6554	292	198	93				291			1
안동 (054) 856-4200	79	8	29			출장 10	47	31	1	
울산 (052) 246-9568	105	34	59				93		12	
익산 (063) 851-5113	254	72	173			출장 5	250		1	3
인천 (032) 865-1120	303	165	120				285	3	2	13
전주 (063) 244-2930	536	152	138	195	47		532		1	3
정읍 (063) 535-3705	100	34	51				85	15		
진주 (055) 746-7975	156	38	67	1			106	40		10
창원·마산 (055) 261-0280	339	207	64	4			275	59		5
청주 (043) 257-0088	247	88	67				155	80	12	
춘천 (033) 257-4688	98	52	13			출장 30	95	3		
태백 (033) 554-4004	94	31	33			출장 30	94			
평택·안성 (031) 611-4251	124	56	58				114	8	2	
제천 (043) 644-5690	108	42	64				106			2
포항 (054) 283-7555	69	16	48				64	4		1
지부총상담	6,824	2,890	2,356	209	47	출장 465	5,967	765	39	53
총 상담	13,023	4,225	6,481	441	47	출장 465 순회 3 지상 1	11,663	1,061	202	97

\*\*2016/5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64,582건

# 악어 프로젝트

남자들만 모르는 성폭력과 새로운 페미니즘



토마 마티외의 글·그림  
맹슬기 옮김  
푸른지식, 2016

이 책의 171쪽에 실린 여성학자 권김현영의 후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이 책을 읽고 새삼 놀랐다. 유럽 여성들도 아시아 여성들과 비슷한 말을 듣고 살고 있다니”이 심정이 내 심정이었다. 책을 읽는 내내, 뭐야, 너무 똑 같잖아, 동서고금에 여자들이 당하는 일과 남자들이 하는 일이 이렇게 다르지 않다니, 한숨이 나왔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도 성폭력을 당한 여성에게 왜 그런 옷을 입었니? 왜 그 시간에 그런 곳에 있었니? 라고 한다. 피해자를 탓하는 거의 유일한 범죄가 성범죄일 것이다.

「악어 프로젝트」 ‘남자들만 모르는 성폭력과 새로운 페미니즘’이라는 부제의 이 책은 여성이 겪는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과 성차별을 가감 없이 묘사한 그래픽 북이다. 실제 상황에서 오가는 욕설과 행동을 그대로 담아내서 큰 논란이 되었다고 한다. 2014년 11월 25일 프랑스 툴루즈에서 열린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 기념 전시회에 초청되었다가 한 우파 여성 정치인이 - 이 대목에서 계급과 성에 대해 다시 잠깐 생각했다. - 저속하고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전시가 취소됨으로써 프랑스 사회에서 격한 논쟁이 벌어졌다.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주제 선택과 표현방식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고 있는 프랑스 만화가인 작가 토마 마티외는 ‘이 작품은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성폭력을 겪은 여성들이 솔직하게 들려준 경험담을 충실하게 그림으로 옮긴 것이다. 희생자들을 생각한다면 이 작품이 지속하다는 비판은 그들에게 아주 민감한 발언’이라며 유감스러워 했다고 한다.

이 책은 길거리 성추행, 직장 성희롱, 데이트 폭력 등 일상적으로 만연해 있는 다양한 성폭력 상황을 50여개의 에피소드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노골적인 언행과 욕설까지

그대로 담아내고 있어, 쉽고 편하게 읽을 수는 없다. 가해자인 남성들을 모두 초록색 악어로 표현한 것이 특징인데 이에 관해서는 책의 말미에 실린 로랑 플림의 글을 보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왜 모든 남성을 포식자의 이미지로 표현했는가, 남성과 여성은 크게 다르지 않고 성별은 그렇게 분명하게 분리되고 단혀 있는 범주가 아님에도 작가는 여성의 관점이 충분히 보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중립적인 관점을 피했다는 것이다. - 중립을 피한다는 것에도 얼마나 많은 설명이 필요한지 - 이렇게 이 책은 성폭력적인 상황에 대한 다양한 에피소드와 그에 맞서는 전략 그리고 말미의 다양한 해설까지, 성폭력 전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훌륭한 교과서이다.

책의 마지막에 드디어 등장하는 남자 사람은 정말 반갑기 그지없다.

이 책의 부록으로 책 전반을 요약해 놓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 꼼꼼 대응 가이드북’도 훌륭하다.

20대의 딸과 아들이 있는 우리 집에서 “너와 아빠는 엄마와 누나에게 매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남성이지만 모르는 다른 여성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일 수 있다. 그것은 의지와 관계없는 구조적인 문제다.” “모든 무슬림에게 잠재적 테러리스트라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모든 남성을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 나는 - 일상에서 얼마나 조심하는 데라는 설명이 이어지면서 - 잠재적 가해자가 되고 있는 게 매우 매우 매우 불쾌하고 불편하다”는 토론이 계속되고 있다. 사실 잠재적 가해자라는 말도 썩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말이다. 어서 이 책을 집에 가서 권해야겠다.

이 숙 현 편집부장

# 2016년 7월 교육부

##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관련 비디오시청
- ▶ 일정 : 매주 금요일 오후 2:00 ~ 3:30
- 2단계 : 집단 심리상담  
(대상 : 본소 법률상담 내담자, 사전 예약 필수)
- ▶ 일정 :매월 둘째 · 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7/25과 8월 휴강)
- ▶ 강사 : 김명준 소장(세은심리상담연구소)

## 한마음 가족캠프

양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형성을 위해 온 가  
족이 참여하여 배우고 즐기는 1박2일 무료 가족동반  
프로그램

- ▶ 일시 : 2016년 8월 27일(토) 오후4시~28일(일) 오후1시
- ▶ 대상 : 부부 동반 참석이 가능한 신청자
- ▶ 장소 :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 ▶ 신청방법 : 전화로 수시접수 중(참여를 원하는 분은 미리 배  
우자와 상의하여 참여의사를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  
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무료  
공개강좌

- ▶ 일시 : 2016년 1월 ~12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2시 ~ 4시(8월은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수시접수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정신건강 의학과 원장)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시	강의제목
7월 28일(목)	전이감정과 부모세대와의 갈등
9월 22일(목)	자기보호 위한 자기주장과 거절 공포
10월 27일(목)	친밀감, 관계의 유형 그리고 심리적 거리
11월 24일(목)	외도의 유형과 대처
12월 22일(목)	임상 예를 통한 부부갈등 상담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EL : 02-782-3601 FAX :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E-mail : edu@lawhome.or.kr  
트위터 :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무료 공개강좌

## 한마음 가족캠프

양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형성을 위해  
온 가족이 참여하여  
배우고 즐기는 1박2일  
무료 가족동반 프로그램